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

■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98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3
2. 제정안의 구성체계	11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14
4.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5
나. 위험작전참여수당(안 제6조)	18
다. 의료지원(안 제8조)	21
라.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9조 및 제10조)	23
※ 참고자료	26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5. 6. 26.
3. 회부일 : 2025. 6. 27.

II.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

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안 제6조)

다.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양로·요양 지원, 재가복지, 심리재활 서비스,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6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 제정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혹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¹⁾으로 규정되어 있음.²⁾

1) 이외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참고자료 1)).

2)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

- 따라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작전에 참여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였더라도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지 않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없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에 의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이들은 “사망·상이 또는 수훈 사실이 없더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
- 「참전유공자법」 제2조는 참전유공자를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쟁 시기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³⁾ 또한 국방부 「참전업무처리훈령」

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참전유공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에서도 6·25전쟁 및 월남전 전투 및 부대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결정하고 있음.⁴⁾

- 이와 같이 법률에서 정하는 ‘참전’의 개념은 사실상 6·25전쟁과 월남전으로 한정하여 전쟁에 직접 참여하거나 국방부장관이나 경찰관서장에 의해 참전 사실을 인정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법률에 의하면 전쟁을 지원하는 물자수송, 난민구호 등 ‘비전투 작전’ 참여는 사망이나 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작전이라 하더라도 참전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6·25전쟁 및 월남전쟁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한 사람은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하여 위험작전 참여수당, 의료지원 및 요양지원 등 합당한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4)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2024, 국가보훈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를 긍정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의 국가유공자 지원체계와는 별개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대해 별도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위험작전참여수당(안 제6조), 의료지원(안 제8조), 양로·요양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심리재활(안 제15조)이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임.
- 제정안의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 중 별표의 전투 또는 작전을 말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별표]에서 위험작전으로 제1연평해전(1999. 6. 15.), 제2연평해전(2002. 6. 29.), 대청해전(2009. 11. 10.), 천안함 피격 사건(2010. 3. 26.),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등의 “서해수호” 및 십자성작전(1975. 4. 6~5. 13), 아덴만 여명작전(2011. 1. 18. ~ 1. 21.) 등 “국민구출”을 열거하고 있음.
- 제정안의 위험작전 참여 대상자는 총 4,462명으로, 이 중 국가유공자로 22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작전 수행 시기에 따라 연령은 십자성작전을 제외하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서해수호 관련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2025년 5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참여자	유공자	전사 (전몰 군경)	전상 등록 현황					전역 후 미신청	복무중
				소계	등록 (전상)	등급 미달	요건 비해당	진행중		
제1 연평해전	2,024	32	-	16	3	1	-	12	5	2
제2 연평해전	468	29	6	17	15	-	-	2	3	5
대청해전	481	-	-	-	-	-	-	-	-	-
천안함	107	105	47	34	32	1	1	-	10	24
연평도	778	18	2	16	14	2	-	-	-	-
계	3,858	184	55	83	64	4	1	14	17	29

자료: 국가보훈부

<주요 특수작전 참전유공자의 발생 시기와 현재 연령(추정)>

구분	발생 시기	당시 연령	현재 연령
십자성작전	1975년 4월 6일 ~ 5월 13일	19~24세	69~74세
		25세 초과	75세 초과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6일~15일	19~24세	45~50세
		25~29세	51~55세
		30~35세	55~61세
제3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19~24세	42~47세
		25~29세	48~52세
		30~35세	53~58세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19~24세	35~40세
		25~29세	41~45세
		30~35세	46~51세
연평도 포격전	2010년 11월 23일	19~24세	34~39세
		25~29세	40~44세
		30~35세	45~50세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19~24세	34~39세
		25~29세	40~44세
		30~35세	45~50세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 1월 18일 ~21일	19~24세	33~38세
		25~29세	39~43세
		30~35세	44~49세

자료: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참조

□ 다만,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비교하여 동 법의 지원대상인 위험작전 참여군인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국가보훈부가 2024년 실시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위험 작전 참여군인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와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61%)를 차지함.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준하는 전투나 작전에 대한 의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적 응답 ⁵⁾
십자성 작전	1(4.2%)	2(8.3%)	3(8.6%)	4(16.7%)	14(58.3%)	18(75.0%)
아덴만 여명작전	0	2(8.3%)	2(8.3%)	4(16.7%)	16(66.7%)	20(83.3%)
서해 교전	0	1(4.2%)	1(4.2%)	2(8.3%)	20(83.3%)	22(91.7%)
연평도 포격전	0	1(4.2%)	1(4.2%)	3(8.6%)	19(79.2%)	22(91.7%)
대침투 작전	0	1(4.2%)	1(4.2%)	6(25.0%)	16(66.7%)	22(91.7%)

자료 :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 둘째, 세대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전 참전유공자와 달리 특수작전의 경우 상당히 많은 보훈 대상자들이 현재 30대이며, 이들의 욕구나 바람 역시 이전 참전유공자와 다를 수밖에 없음. 기존 참전유공자 보훈 정책은 65세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경우 교육이나 취업 관련 지원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음.
- 1975년에 발생한 십자성 작전의 경우 대부분의 참여가자 70대 이상인 반면, 2009년부터 발생한 대청해전·천안함 피격 사건·연평도 포격

5) 설문 조사에 응한 24명의 전문가 가운데,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로 응답한 비율임.

사건·아덴만 여명작전 등의 참가자는 다수가 30대로 추정됨.

- 국가보훈부는 제정안에 대하여,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국가보훈영역에서 예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의하되,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총 24개 조문의 본칙과 1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 대상자, 등록 및 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수당 및 의료 지원 등’으로 위험작전참여수당, 의료·양로·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보칙’으로 수당 환수, 권한의 위임,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은 국가보훈부의 여러 유공자 지원법 중에서 제정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정된 「참전유공자법」과 비슷한 체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참전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계지원금, 장례서비스, 장제보조비, 주택 우선공급, 단체설립 지원 등은 제외되어 있음.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구성 체계>

제정안	「참전유공자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적용 대상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3(해외 파병용사의 날)
제4조(등록 및 결정)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5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제2장 수당 및 의료 지원 등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위험작전참여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권리의 보호)	제6조의2(권리의 보호)
	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8조(의료지원)	제7조(의료지원)
제9조(양로지원)	제8조(양로지원)
제10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1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12조(조사·질문 등)	제8조의4(조사·질문 등)
제13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15조(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8(장례서비스)
	제9조(묘지에의 안장)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7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12조(사업의 재원)
	제12조의2(보조금)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8조의2(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0조(조직)
	제21조(임원 등)
	제22조(지부장 등)
	제23조(정관)
	제24조(사업)
	제24조의2(수익사업)
	제24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4조의4(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24조의5(명의 대여 금지 등)
	제24조의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4조의8(수익금의 사용) 제24조의9(회계감사 등) 제24조의10(실태조사) 제24조의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제24조의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의13(청문)
	제25조(총회)
	제26조(이사회)
	제27조(보조금)
	제28조(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30조(시정조치)
	제31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2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33조(해산사유)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제3장 보칙	제4장 보칙
제18조(위험작전참여수당 등의 환수)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9조(반환의무의 면제)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제20조(지원의 정지)	제38조(예우의 정지)
제21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2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장 벌칙
제24조(벌칙)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1조의3(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정안에 따른 소요예산

- 제정안과 같이 위험작전 참여수당 지급(65세 이상), 의료·양로·요양·심리재활 등 지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보훈부는 위의 지원에 연평균 8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⁶⁾

<국가보훈부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연평균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44,071	8,814	8,501	8,643	8,800	8,972	9,156
참여수당	26,275	5,255	4,671	4,963	5,255	5,547	5,839
의료지원	6,397	1,279	1,184	1,230	1,278	1,327	1,378
요양지원	32.9	6.6	6.4	6.5	6.6	6.6	6.8
재가복지	11,366	2,273	2,640	2,443	2,260	2,091	1,932

6) 다만, 법률안에서는 위험작전 참여자의 인정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로 예우받는 경우가 있는 점 등 고려 시 소요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힘.

4.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제정안 제1조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동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는 “위험작전”을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 중 별표의 전투 또는 작전’으로 규정하고, 별표에서 위험작전으로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서해수호” 및 십자성작전⁷⁾, 아덴만 여명작전⁸⁾ 등 “국민구출”을 열거하고 있음.

또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은 ‘위험작전에 참여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으로 정의하되, 위험작전 참여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7) 1975년 2월 베트남 현지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하여 1975년 4월 4일 월남공화국 전시 난민 구호 원조 방안(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4월 7일 국방부에서 작전명을 ‘75 십자성 계획’으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1975년 4월 6일 해로를 이용해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해군 LST(전차상륙형 함정) 2대 부산항을 출발함. 교전은 없었지만 베트남의 주·야간 공격을 받을 위협이 농후하였으며, 군사적인 작전 대비 태세를 유지한 채 작전을 지속함.

8) 2011년 1월 15일 오전 7시 40분(현지 시간) 아랍 에미리트(UAE)에서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향해하던 화학 물질 운반선 한국 국적의 삼호주얼리호(11,566톤)가 13명의 무장 해적에 의해 습격을 받고 선박마저 장악된 사건에서, 청해부대 6진(최영함)에 의해 수행된 인질 구출 작전. 영함 함포의 위협사격과 링스헬기의 엄호 사격하에 UDT 작전팀이 투입되어 인질 21명을 전원 구조하고 해적 8명을 사살, 5명을 생포함.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 중 별표의 전투 또는 작전을 말한다.
2.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란 위험작전에 참여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을 말한다. 다만, 위험작전 참여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위험작전 참여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작전

구분	번호	전투·작전명	기 간
서해수호	1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15일
	2	제2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3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4	연평도 포격전	2010년 11월 23일
	5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국민구출	6	십자성작전	1975년 4월 6일부터 1975년 5월 13일까지
	7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 1월 18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 제정안과 같이 지원 대상을 서해수호 5개 작전 및 국민구출 2개 작전에 한정할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별표에 열거된 작전 외에도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하여 수행되는 교전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도가 높은 작전’이 기존에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군본부는 교전 상황에 준하는 위험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함께 구출하여 인도주의적 작전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미라클 작전(2021. 8. 23. ~ 8. 28.)⁹⁾’과 ‘프라미스작전(2023. 4. 21. ~ 4. 28.)¹⁰⁾’을 별표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임.¹¹⁾

9) 미라클 작전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으로 인한 탈레반의 위협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조력자 구출 작전임. 미군 측이 제공한 첩보에 따르면 카불 공항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였고, 이에 타국 수송기들은 이륙 시 플레어를 발사하면서 생존성을 보장해야 했음. 1차 조력자 탈출 시 사용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의 게이트는 3일 뒤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음. 검문소 통과 및 항공기 탑승 시 탈레반군과 미군과 지속적인 협조·협상을 통하여 탈출을 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교전은 없었지만 위협으로부터 교민을 보호해야 하는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했음.

10) 2023년 4월 15일 발발한 수단 내전(무력 충돌)으로 인해 수단 전 지역에서 외교주재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한국 교민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실행된 국군(육군, 해군, 공군)이 합동으로 수행한 교민 철수 작전

11) 미라클 작전과 프라미스 작전은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음.

나. 위험작전참여수당(안 제6조)

□ 제정안 제6조는 위험작전 참여 군인 중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법」의 참전명예수당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수당지급대상자가 보훈급여금이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위험작전참여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는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험작전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험작전참여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②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험작전참여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③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위험작전참여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⑥ 미지급 위험작전참여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 ⑦ 위험작전참여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참전유공자법」의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수당 수급 연령을 65세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되나,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은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월액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보훈법 체계상 구체적인 지급액을 법률에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국가보훈부에서 그 구체적인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위험작전 참여자들을 6.25 전쟁이나 월남전 참전 용사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을 두어 지급할지 여부와 차등지급하는 경우 최소한의 하한액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음.¹²⁾

< 특수작전 참여자의 수당액 관련 질문 >

지문	비율
동등한 지원이 필요	39.1%
참전유공자에 포함시키되 참전명예수당은 3분의 2수준으로 지원	26.1%
참전유공자에 포함시키되 참전명예수당은 2분의 1수준으로 지원	8.7%
참전유공자에 포함시키되 참전명예수당은 3분의 1수준으로 지원	4.4%
직접적 지원보다 국가적 인정과 간접적 지원만해도 충분	21.7%

자료 :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p.140

- 둘째, 제정안은 위험작전참여수당을 참전유공자와 같이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연평도 포격전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 참여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여전히 30대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65세 연령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12) 2025년 참전명예수당은 45만원임.

다. 의료지원(안 제8조)

- 제정안 제8조는 「참전유공자법」 제7조의 의료지원¹³⁾과 같이 위험작전 참여군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조(의료지원) ① 위험작전 참여 군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우 가운데 절반가량이 전사한 천안함 용사들의 경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신과

13) 「참전유공자법」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바,¹⁴⁾ 제정안의 의료지원에 관한 규정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보임.

14) 김승섭, ‘천안함 생존자의 사회적 경험과 건강 실태 조사’, 2018

- 생존 장병 56명 가운데 24명이 조사에 응함
- PTSD 진단 87.5%(걸프전 포로 군인의 2배)
- 12명(50%)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6명(25%)이 실제 자살 시도한 적 있음.
- 대다수가 수면 장애, 알코올 의존증, OO 분노 조절 장애, 폐쇄 공포증, 공황 장애 등을 겪음
- 16.6%가 지방간 진단 (비슷한 연령대 남자 일반 0.6%)
- 79%가 정신과 치료 제대로 못 받아
- 국군 수도 병원, 부대 의무실 모두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만 처방

라.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안 제9조 및 제10조는 「참전유공자법」 제8조 및 제8조의2¹⁵⁾의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 보조와 같이 위험작전 참여군인에 대한 양로지원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9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위험작전 참여 군인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10조(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험작전 참여 군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¹⁶⁾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참전유공자법」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참여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십자성작전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작전의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65세 미만으로 추정되므로 양로지원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과 달리, 제정법의 적용대상은 상당수가 65세 미만이므로, 동 조항이 위험작전 참여군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요 특수작전 참전유공자의 발생 시기와 현재 연령(추정)>

구분	발생 시기	당시 연령	현재 연령
십자성작전	1975년 4월 6일 ~ 5월 13일	19~24세	69~74세
		25세 초과	75세 초과
제1연평해전	1999년 6월 6일~15일	19~24세	45~50세
		25~29세	51~55세
		30~35세	55~61세
제3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19~24세	42~47세
		25~29세	48~52세
		30~35세	53~58세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19~24세	35~40세
		25~29세	41~45세
		30~35세	46~51세

-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구분	발생 시기	당시 연령	현재 연령
연평도 포격전	2010년 11월 23일	19~24세	34~39세
		25~29세	40~44세
		30~35세	45~50세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	19~24세	34~39세
		25~29세	40~44세
		30~35세	45~50세
아덴만 여명작전	2011년 1월 18일 ~ 21일	19~24세	33~38세
		25~29세	39~43세
		30~35세	44~49세

자료: 특수작전 참여자 참전유공자 포함 방안 연구 참조

문의처
02)6788-5110

참고1

법률안에 따른 위험작전 현황

구분	전투·작전명	내 용
서해 수호	제1연평해전	(개요) 북한 경비정 7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충돌 공격함에 따라 교전이 이루어진 해상 전투 (교전일시) 1999.6.15.
	제2연평해전	(개요) 북한 경비정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격파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02.6.29.
	대청해전	(개요) 북한 고속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대응 사격 등 교전을 실시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09.11.10.
	연평도 포격전	(개요) 북한이 한국령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한 직접 교전 작전 (교전일시) 2010.11.23.
	천안함 피격사건	(개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잠수정의 어뢰로 피격한 직접 교전 사건 (교전일시) 2010.3.26.
국민 구출	십자성 작전	(개요) 베트남과 남베트남 간 교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남베트남 패망 당시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시한 교민 구출 및 해외 난민 구호 작전 (작전기간) 1975.4.6.~5.16.
	아덴만 여명작전	(개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출항하여 스리랑카로 항해하던 한국 삼호주얼리호를 13명의 무장 해적이 습격하여 선박 장악, 청해부대(최영함)에 의해 인질 구출 작전 실시 (교전일시) 2011.1.18.~1.21.

참고2

위험작전 참여군인 인원 현황 [출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단위: 명)

구 분	해 군	해병대	합 계
제1연평해전	2,024 (전투경력 1,110 명예로운경력 914)	0	2,024
제2연평해전	468 (전투경력 426 명예로운경력 42)	0	468
대청해전	481 (전투경력 413 명예로운경력 68)	0	481
천안함피격사건	107 (전투경력 104 명예로운경력 3)	0	107
연평도포격전	10 (전투경력 2 명예로운경력 8)	768 (참여인원 768)	778
아덴만 여명작전	335 (전투경력 289 명예로운경력 46)	0	335
십자성 작전	269 (참여인원 269)	0	269
합계	3,694	768	4,462

* 출처: 해군본부, 해군대사령부